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81
----------	-----

2024. 6. 24.(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상정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5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6월 11일

-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상정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기반은 미약함.

- 청소년과 청년기의 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.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, 이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은 그 사무 성질상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 할 수 있음.
- 이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·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뜻을 정의함 (안 제2조)
- 도시사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 (안 제6조)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 (안 제7조)
- 정책의 전문성 제고,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유관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, 제9조)
- 서비스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(영 케어러²⁾) 지원과 관련해 2021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20대 청년의 사건(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함)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확대됨.
- 정부는 부양·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,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대상자로서의 정의·실태조사 등을 위한 제도 부재로 대상 설정, 지원 방안 마련 등에서 한계가 발생함.
- 이에 2022년 2월 14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국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실시, 관련 특별법 제정, 돌봄·생계·의료부담 완화 및 학습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‘가족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’을 발표함.
- 제21대 국회에서도 「가족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법안」(서영석 의원 대표발의/2023. 3. 23.)과 「가족돌봄아동·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(강민정의원 대표발의/2023. 3. 29.)이 발의되었음.
- 청소년 및 청년기 가족돌봄 부담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투자 부족 등으로 이어지고 당사자 개인의 삶도 취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음.
- 자아를 개발하고 미래 진로를 설계해야 할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을 떠안은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는 만큼,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고유사무인 주민복지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바,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2) 영 케어러(Young Carer): 질병, 장애, 정신건강,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청소년·청년을 뜻하는 용어로,

[타 시·도 유관 조례 제정 현황]

- 현재 서울, 인천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경남, 충남, 전북, 제주 등 12개 시·도에서 “가족돌봄청년” 또는 “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” 등의 용어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.
- 충청북도 내 시·군 중에는 괴산군이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(제정 2023. 3. 17.)를 제정하였음.

자치단체	조례명	제정일	소관부서
서울	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	2022-10-17	복지정책과
인천	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	2023-11-09	복지정책과
대구	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	2023-08-10	복지정책과
광주	광주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	2023-08-07	돌봄정책과
대전	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	2023-07-14	청년정책과
울산	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	2023-12-28	복지정책과
경기	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05-17	복지정책과
강원	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	2023-03-03	복지정책과
경남	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	2024-01-02	청년정책과
충남	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	2024-04-05	복지보육정책과
전북	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11-10	사회복지과
제주	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12-22	복지정책과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구분	조 문	규 정 사 항	구분	조 문	규 정 사 항
총칙 규정	제1조	목적	실체 규정	제7조	지원사업
	제2조	정의		제8조	민간 전문가 활용
	제3조	도지사의 책무		제9조	협력체계
	제4조	다른 조례와의 관계		제10조	중복지원의 제한
실체 규정	제5조	기본계획 수립 등	보칙 규정 부칙	제11조	사무의 위임·위탁
	제6조	실태조사		시행일	

○ 안 제2조는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,

- “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”에 대해 ‘고령,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「민법」 제779조³⁾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’으로 정의함.
- 현행 「청소년 기본법」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, 「청년기본법」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본 조례안에서 “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”의 연령을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한 것은,
 - 2022년 정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‘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방안’에서 지원 대상 연령을 13부터 34세까지로 정하고 있다는 점
 - 「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」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
 - 충청북도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수행 중인 ‘복지부 신(新) 취약청년(가족돌봄청년, 고립은둔청년) 시범사업’의 대상 연령이 19세부터 39세까지인 점 등
- 실제 도에서 수행 중이거나 추진될 사업 대상 범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.
- 타 시도의 경우, 경남·전북·제주는 본 조례안과 동일한 연령기준으로 규정한 반면, 서울·인천·대구·울산·충남은 9세부터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<타 시·도 조례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대상 연령기준>

경기	서울	인천	대구	울산	충남
34세 이하	9세~34세	9세~34세	9세~34세	9세~39세	9세~39세
경남	전북	제주	강원	대전	광주
13세~39세	13세~39세	13세~39세	14세~39세	18세~39세	19세~24세

※ 충청북도 괴산군: 9세~24세

3) 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- 아직까지 가족돌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마저 없는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‘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방안’ 과 ‘복지부 신(新) 취약청년(가족돌봄청년, 고립은둔청년) 시범사업’을 준용해 지원 대상 연령을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.
 - 단, 충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.
- 안 제5조는,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한 것으로,
- 안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제3항과 4항은 기본계획 수립·시행 시 당사자의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규정했고, 안 제5조제5항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6조는,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·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- 충북지역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구체적 통계가 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,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7조는,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수행할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.
- 안 제7조제1항제1호는 가족에 대한 간병·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, 돌봄과 관련한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의 어려움, 간병 및 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족, 요리·청소·빨래 등 집안일의 미숙은 가족 돌봄

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가족에 대한 간병·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

- 안 제7조제1항제2호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·정서적 지원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, 보건복지부가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‘가족돌봄청년(13세~34세) 실태조사’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 및 청년에 비해 자살 생각과 우울감이 7배 이상 더 높고 삶의 만족도는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남.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·정서적 지원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,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전이되는 우울감의 특성상 지원대상으로 가족까지 포함한 것도 타당함.
- 안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생활안정 지원, 의료서비스 지원, 취업 지원, 문화·체육활동 지원 등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,
- 안 제7조제1항제8호에 규정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충청북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도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지원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함.

<충청북도 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(13세~39세) 인원 추산>

- 보건복지부 ‘가족돌봄청년(13세~34세) 실태조사’에 따르면,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인구 비율이 최소 3.7%로 추정됨.
-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근거로 현재 충청북도 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(13세~39세)의 잠재적 인원을 추산하면 최소 17,245명* 정도임.

* [충북 13세~39세 인구 수 466,326명(‘24. 05.기준) × 3.7]/100

- 안 제8조 및 제9조는,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전문가·법인·단체 등에 자문하고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- 자문과 협력체계 구축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10조는, 이 조례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
 - 서비스 중복으로 인한 재정 낭비 방지, 형평성 문제 예방 등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1조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무를 시장·군수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, 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며,
 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은 정부뿐만 아니라,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정책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었고, 집행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”이란 고령,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책 수립·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, 인력,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정책과제

2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
3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
4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
5.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간병·가사 서비스 지원
2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·정서적 지원
3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
4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
5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
6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·체육활동 지원
7.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
8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충청북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
9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시·군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

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민간 전문가 활용) 도지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전문가·법인·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)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, 시·군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중복지원의 제한) 도지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1조(사무의 위임·위탁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시장·군수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
2.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,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□ 청소년 기본법
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□ 청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□ 민법

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6조(실태조사 등)
- 조례안 제7조(지원사업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'23.12.31.일 도내 청년인구(293천명) 기준 가족돌봄청년 1천명* 산출
* 기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정치(전체 청년의 0.35%) 적용
※ 「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-보건복지부-」 결과 전체 청년의 0.6% 정도 수준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** 추진 비용
** 일상돌봄 서비스, 심리·정서 지원, 직업훈련·취업 지원, 문화·체육활동 지원, 인식개선 사업 등

나. 추계 결과
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: 30백만원('25년)
-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(계) 4,294백만원('26~'28년)
 -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: 3,994백만원('24년 794, '25~'28년 800)
 -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심리·정서 지원 : 60백만원('26~'28년)
 -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직업훈련·취업 지원 : 150백만원('26~'28년)
 -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문화·체육활동 지원 : 60백만원('26~'28년)
 -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: 30백만원('26~'28년)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 및 시군비 매칭 지원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		-	-	-	-	-	-
세 출		794,000	830,000	900,000	900,000	900,000	4,324,000
실태조사		-	30,000 (도 100%)	-	-	-	30,000
일상돌봄 서비스		794,000 (국 72, 도 15, 시군13)	800,000 (국 72, 도 15, 시군13)	800,000 (국 72, 도 15, 시군13)	800,000 (국 72, 도 15, 시군13)	800,000 (국 72, 도 15, 시군13)	3,994,000
심리·정서 지원		-	-	20,000 (도 100%)	20,000 (도 100%)	20,000 (도 100%)	60,000
작업훈련·취업 지원		-	-	50,000 (도 100%)	50,000 (도 100%)	50,000 (도 100%)	150,000
문화·체육 지원		-	-	20,000 (도 100%)	20,000 (도 100%)	20,000 (도 100%)	60,000
도민 인식개선		-	-	10,000 (도 100%)	10,000 (도 100%)	10,000 (도 100%)	30,000
재원 조달							
의 존 재 원	소 계	794,000	830,000	900,000	900,000	900,000	4,324,000
	국 비	574,100	576,000	576,000	576,000	576,000	2,878,100
	도 비	117,450	150,000	220,000	220,000	220,000	927,450
	시군비	102,450	104,000	104,000	104,000	104,000	518,450